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⑥ - 청성사

신라말 학자 고운 최치원 선생 봉향사당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64호 청성사



최 중 규
前 포천양교 전교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제64호 청성사(淸城祠)는 1975년9월5일 지정되었으며 신북면 가채리 산 23-2번지에 소재하고 규모는 건평 10.2평으로 배향인물은 崔致遠(857~?)이다.

◆연혁

청성사는 신북면 가채리 산 23-2번지에 있다. 신라말의 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을 봉향하는 사당이다. 청성사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고운 선생의 영당으로 존치되었다. 1740년(영조16)에 후손 한 사람이 해인사에 봉안하고 있는 영정을 화공을 시켜 모사해서 봉안해 오던 중, 여러 후손들이 모두 영정을 한 집안에서 모시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영당을 건립하여 후손 모두가 봉향할 것을 권하였다.

이에 뜻을 모아 1768년(영조44)에 후손 최성묵(崔成默) 등의 발기로 영당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이곳에 영정을 옮겨 봉안하였다. 처음 고운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던 영당은 영평현의 백로주와 청학동 사이로, 지금의 영평면 금주리였다. 이후 서원의 절제대로 춘추 향사를 모셨었다. 그러

다가 영당의 관리 및 운영이 곤란해져서 향사가 부실해지자 포천 유림의 발의로 1935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청성사라 개칭하였다. 후손들이 봉향해오던 향사도 포천유림이 주관하여 행사하게 되었다. 현재 청성사의 향사는 매년 음9월15일로 정하여 행한다. 매월 삭일(1일)에는 당직(當直)이 분향한다.

◆배향인물 崔致遠(857~?)

선생은 신라 857년(헌안왕 1)에 출생하여 12세 때 당에 유학하고 18세 때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선주(宣州)을수현위(懷水縣尉)를 거쳐 황소(黃巢)의 반란이 일어나자 고병(高嶺)의 종사관이 되어 「토황소격문」을 지어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문명을 중국 대륙에 떨쳤다. 28세 때(884) 귀국하였으며 893년(진성여왕 7)에 시독겸한림학사, 수병 부시랑지서서감을 역임하고 견당사에 임명되었으나 도둑이 횡행하여 가지 못하고 이듬해에 시무 10조를 내어 아찬이 되었다. 뒤에 각지를 방황하며 풍월을 읊고 자연을 벗하다가 가야한 해인사에 들어가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고려태조 왕건이 그의 학풍을 듣고 글로써 문답하였다 하며 그는 『계원필경』을 저술하였고 봉암사비문, 송복사비문 등 많은 시문이 전하여지고 있다. 고려 현종때 문묘에 배향하고 문창후의 시호를 내려 그의 학덕을 기리었다.

◆청성사의 구성과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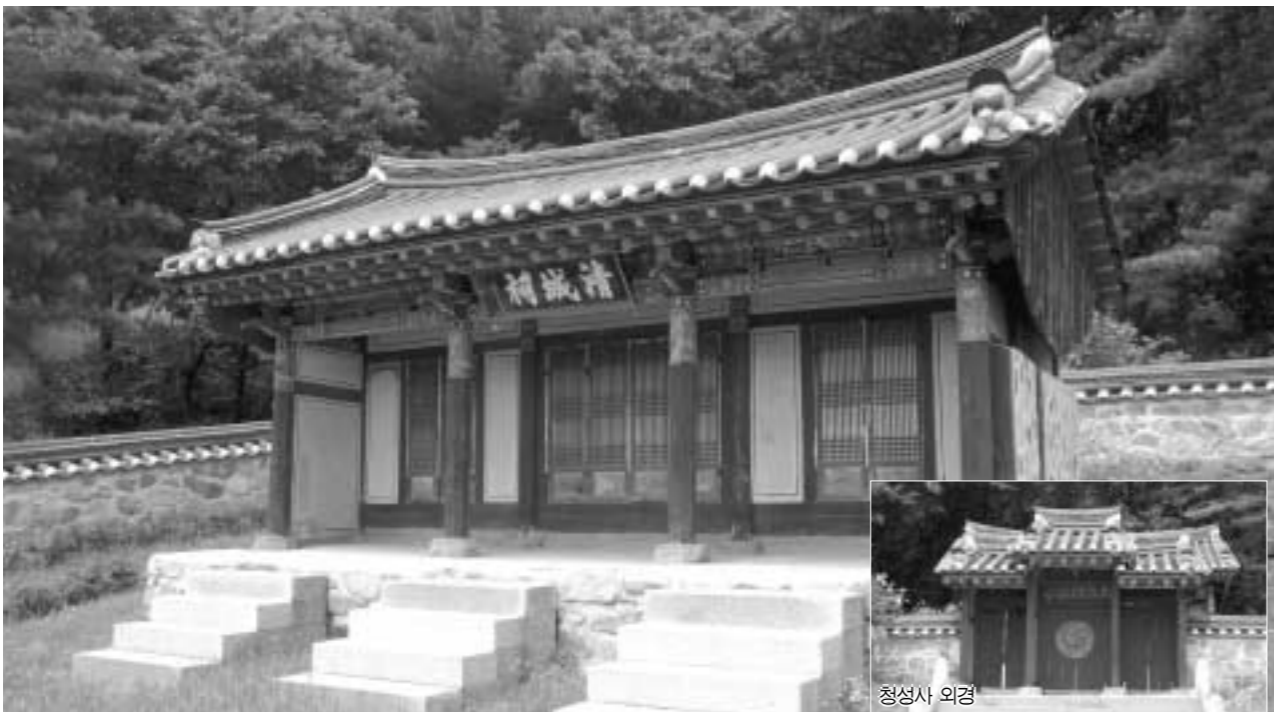
청성사는 산2부 능선에 자리잡고 있다.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쪽으로는 시아가 트이면서 들이 펼쳐져 있다.

화강암으로 축조된 장대석과 자연석으로 축조된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우와 삼문이 있고 주위에는 자연석 막돌로 축조된 담장이 둘러 있다.

사우의 전면 중앙 추녀 밑에는 淸城祠라 쓴 현관을 내걸었다. 현액을 쓴 이는 정두화이다. 청성사의 본전인 사우의 전면에는 각 칸마다 창방을 설치하고 공간포가 없는 대신 2개의 소로가 각 칸의 장허를 받치고 있다. 그 위에 굽도리를 설치하고 서까래를 엮어 겹처마의 맛배지붕을 형성하였다. 평주와 귀기둥머리의 보머리를 받친 익공은 초의공이며 내부의 마루는 정자형이다. 안에는 마루를 깔고, 그 위에 자리를 펴 두었다. 그리고 중간 도리 밑에 중문을 만들고, 중앙칸에는 4짝의 분합문을 좌우측 문에는 두짝의 분합문을 달았다. 분합문 밖의 3급인 섬돌을 놓았다.

사우 안쪽 중앙에는 고운 선생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이 영정은 가로 89cm, 세로 135cm 크기이며 작자와 연대는 미상이다. 영정은 복단에 남향하여 모시었다. 두 짝 문을 달아서 훼손을 방지토록 하였다. 영정 밑에는 제상 및 향탁을 설치하여 제수를 진설할 수 있게 하였다.

사당 주변에는 네모난 담을 쌓고 앞쪽에 외삼문(外三門)을 내었다. 외삼문은 사람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중문과 마주보게 된다. 삼문 담장으로 외부 공간과의 구획을 지어 분별하게 하였지만, 담장의 높이는 높지 않게 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깨지 않고 적응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자연의 산수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성사 외경

포천신북면 가채리 산23-2번지에 소재한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제64호 청성사(淸城祠).

●●●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연구 ⑨

절충형 경찰제도로 자치경찰제 조화 도모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국가에서도 전적으로 자치경찰제 도만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 목적에 따라 국가경찰제도를 가미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경찰제도를 바로 절충형 경찰제도라고 부른다. 절충형 경찰제도란 경찰행정의 국가적 성격과 지방적 성격에 착안하여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첫째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에 자치경찰을 가미하는 형태를 취하는 벨기에 스페인 등이 있으며, 둘째로 자치경찰제가 주축이고 국가경찰요소가 가미된 공존형인 스위스 등이 있으며, 셋째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존립형의 국가경찰 우선형인 독일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원칙 하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체제형인 일본 등이 있다.

자치단체별로 경찰기관이 상호 독립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 미국식 자치경찰제는 일을 지방자치정신에 가장 충실한 이상적인 모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자치단체 이외에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서 395개의 중앙 경찰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국가 전체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종주국인 영국은 중앙정부에서 자치경찰을 조정·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는 물론 심지어는 비상사태시 직접지휘권을 중앙정부의 경찰청에 부여하여 국가치안과 지역치안의 연계와 균형을 위한 장치를 강구하고 국가의 치안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여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시·도의 경찰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광역단체의 자치경찰기관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독립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고유의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즉 전국 통일을 요하는 경찰법령, 통신·통계사무 등과 국가안보와 공안에 관계되는 업무, 광역사건·사고,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등의 국가경찰사무는 국가경찰기관이 수행하고, 방법·교통·일반사무 등의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한편 광역 사건·사고와 대규모 집회시위, 대간첩작전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하여는 시·도의 경찰청에 상호협력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도 절충형 경찰제도를 채택하여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

는 하는 것이 유효하며, 이 제도가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제로서 결맞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본다.

이상으로 수사와 경찰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의 대륙법계의 법률을 계수 받은 법문화적인 토양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면서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 제약에서 건국한 이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5월 10일 경찰법이 제정될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아래에 국가경찰의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을 두고, 시장·도지사 소속아래에 지방경찰청을 두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책임분담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도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국가경찰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완벽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자치경찰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관료주의화, 주민요구에 불응, 경찰부신의 확대 등 그동안 국가경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치안환경과 국민생활의 변화는 경찰제도의 개편논의를 촉발시켰다. 특히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대로 자치경찰제의 도입 문제가 계속되기 되어 왔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외부의 권력, 특히 정치세력의 간섭이나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경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독립화 내지 정치적 중립화의 문제와 현행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의 의해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는 수사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

경찰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수사권독립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경찰의 중립화와 수사권의 독립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의 독립 문제는 별개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정의 논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분리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제하에서도 검사동일체원칙으로 중앙집권화된 국가기관인 검찰의 지휘아래 경찰이 놓이게 된다면 검찰·지방경찰의 상명하복 관계를 통해 중앙으로의 권한집중이 계속되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바뀌는 자치경찰은 내부적으로는 중앙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에도 외부적으로는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여전히 상명하복관계로 통제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분권화 이념에 역행하게 되어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한편 위에서 본 것처럼 수사는 항상 경찰과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으며, 사건·사고의 대부분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수사의 지휘권을 두고 있어 수사의 현실과 제도의 사이의 괴리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범인 검거·증거수집 등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경찰이 부담하고 현실적으로 경찰간부가 대부분의 수사지휘를 하면서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주체로서 권한을 가져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치경찰제에서는 수사권이 당연히 사법경찰관에게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사활동, 사건처리, 신속, 수사의 효율성, 국가안보와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형법권의 행사절차는 형사절차라 하며, 수사절차는 형사절차중의 한 단계이다. 이러한 수사절차의 기본구조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수사절차는 규문주의적 구조와 탄핵주의적 구조로 대별되며, 탄핵주의적 구조는 다시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구조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구조로 양분된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구조는 수사체제에서도 의미 있는 대조를 이룬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제품과 만나보십시오

ABS 및 각종 수지 컬러링 전문업체 ‘(주)신동명케미칼’



합성수지 및 종합유동 및 플라스틱 원료전문 생산업체로서 다양한 메이커 제품과 함께 최신 설비는 물론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컬러링 작업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신동명케미칼. (주)신동명케미칼은 1993년 서울 마장동에서 신동명프라스틱으로 설립된 이후 직원 30여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기업으로 2001년 포천시로 이전하면서 제2의 도약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주)신동명케미칼은 1천여명의 회사규모에서 최선인 기계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컬러 플라스틱 원료를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신동명케미칼은 (주)LG화학, (주)효성T&C, (주)에프피나 코리아의 특판 및 대리점으로서 주력제품인 ABS, PS, 아크릴 및 기타수지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다양한 COLORED RESIN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품질의 우수성 확보와 뛰어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신동명케미칼에서 생산되는 ABS 수지는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부타디엔(Butadiene), 스티렌(Styrene)의 화합물질인 고유동·고충격의 고급수지로 전기·전자제품, 고급생활용품, 원구, 음식용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술제품과 압출물에 사용됩니다. PS-폴리스티렌(Polystyrene) 수지는 성형가공이 양호한 수지이며 GPPS는 투명성, 착색성, 무독성, 성형가공성이 우수합니다. HIPS는 내충격성, 열안정성, 내후성 및 도장이나 접착의 2차 가공성이 탁월한 제품으로 모든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신동명케미칼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컬러링 전문업체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타 업체에 비해 신속한 납품과 월등히 싸게 파는 전력이 주요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플라스틱 업체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이사 양상모